

연방환경청 신규 지하 탱크관리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떻게 주법이 개정될 것인가?

미 연방 환경청 소속 지하탱크 관리 부서에는 지난 2015년 6월 22일자로 연방 지하탱크법을 개정하였다. 1988년 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와싱턴 주환경부에서도 연방법에 준해 연방법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더 엄격하게 지하 탱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기한은 3년 이내 혹은 2018년 10월 까지이다.

연방 신규 지하탱크 관리법에 의거 와싱턴 주법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 요약

매월 정기 장비 점검	지하탱크 소유자 혹은 관리인은 매월 탱크 누출 검지 장치와 석유 엽지름 방지통을 매월 실제로 현지에서 걸어 다니며 눈으로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석유 엽지름 방지통 점검	석유 엽지름 방지통은 매 3년마다 새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통이 이중벽으로 제조되었으면 매월 틈새 확인하여 석유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석유 넘침 방지 장치 정상 작동 확인	석유 넘침 방지장치는 반드시 매 3년마다 정상 작동이 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유류 집유조 점검	이중 배관의 누출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된 집유조는 3년마다 점검하여 새지 않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누출 검지 장치 작동 확인	누출 검지 장치는 매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비행장 방화용 탱크와 야외에 설치된 탱크	이전에 법에 저촉 받지 않던 지하 탱크도 반드시 누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에 설치된 방화 용 탱크는 제외한다.
탱크속 원형 부이 재설치 금지	새로히 설치되는 탱크에는 원형의 부이 (ball floats) 는 더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기존 설치된 탱크에 부착된 원형 부이가 고장이 나면 수선하여 재설치해서는 안된다.
소유권 변경 신고의무	지하탱크 소유자 혹은 관리인은 탱크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탱크 재질 내구성 확인	지하탱크 소유자 혹은 관리인은 알콜 함유량 10% , 혹은 biodiesel 은 20% 이상 일 경우는 반드시 지하탱크 시스템의 재질이 견딜수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비고장시 반드시 수리할것	석유 지하탱크 점검후 이상이 발견될시에는 비록 석유가 누출이 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정상 가동할수있게 반드시 수선하여야 한다.
이중벽 틈새 유출 보고 의무규정	1988년 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만일 이중 배관혹은 탱크의 틈새에 석유가 누출되었으면 반드시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기술한 내용은 전체 개정내용의 일부이다. 연방법 개정 전체 내용을 알고자 하면 아래의 웹을 참고할것:

<http://www2.epa.gov/ust/revising-underground-storage-tank-regulations-revisions-existing-requirements-and-new>.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주환경부의 석유 지하탱크법 개정 상황을 주환경부 지하 석유 탱크관련 웹에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 지역 사무소

석유 지하탱크에 관한 질문은 아래지역 사무소 중 가장 가까운곳으로 문의 하세요

Headquarters: (360) 407-7170

Central Region: (509) 575-2490

Eastern Region: (509) 329-3400

Northwest Region: (425) 649-700

Southwest Region: (360) 407-

6300

일반 UST/LUST 업무 담당자:

Kristopher Grinnell

kristopher.grinnell@ecy.wa.gov

(360) 407-7382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고려:

시각 장애자를 위한 특별 간행물을 포함한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고려를 신청하려면 (360) 407 7170 으로 환경부 독극물 정화국으로 연락. 청각 장애자는 771 로 전화하여 Washington Relay Service 로 연락. 언어 장애자는 TTY - 360-877-833-6341 로 연락 할것.

